

【 2015.10.08(목) 강원일보 】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돔 구장 설계 변경 검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을 행사 용도에 맞게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개·폐회식장 건설이 적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개·폐회식 행사 내용과 상관없이 지어지는 심황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돔 구장 설계를 포함해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을 행사 용도에 맞게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개·폐회식장 건설이 적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개·폐회식 행사 내용과 상관없이 지어지는 심황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돔 구장 설계를 포함해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만8,000석의 서울 고척돔은 1,948억원이 소요됐으며, 우여곡절 끝에 7년 만에 완공했다. 현재 올림픽 개·폐회식장은 4만석 규모인데다 홍제지역 강설량 등을 고려하면 고척돔 보다 오히려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올림픽 이후 1만2,000석만 남기고 돔을 철거할 경우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돔 구장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 염동열 의원 질의에 밝혀 전문가들 철거만 수백억 현실적 불가능 분석

문체부 “용도에 맞게 보완 필요하다는 취지
김 장관 발언 설계 변경·재설계 의미 아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추위 등을 고려해 개·폐회식장을 돔 구장으로 짓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염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의 개·폐회식이 한정된 예산(940억원)에 맞춰 진행하다 보니 부실공사, 졸속 공사 등의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장시간 진행되는 개·폐회식 행사에서 눈, 바람 등으로 관중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돔 구장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달 말 착공해야 2017년 9월 완공이 가능한 상황에서 돔 구장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에 따라
또다시 불가능한 대안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 공기만 단축 할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

하면서 실시설계를 통해 개·폐회식 연출팀의 생각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개·폐회식 행사 이후 1만2,000석 규모의 영구 시설을 제외하고 철거가 되는 만큼 개·폐회식 행사를 치르기 위한 용도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설계 변경 또는 재설계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개·폐회식 행사를 준비하는 (총감독, 무대 예술 감독 등) 측에서 이 같은 요구가 있어 왔고, 공사 기한 등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홍현표기자

건설시장 살아나는데 도내 업체는 경영난 휘청

업체 수 10년만에 절반 감소

도내 건설업의 GRDP(지역내총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건설업체 수가 줄어드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건설업체는 총 12만7,894개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가 및 도시발전으로 도로·시설 관련 공사가 쏟아지며 건설업계의 전체 실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도내 건설업계는 이 같은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수는 2006년 1,071개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723개, 2012년 652개 등에 이어 올해 10월 1일 현재 613개까지 감소했다. 도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었다. 2004년 12.58%에 달했던 도내 건설업 GRDP 비중은 2010년 9.48%에 이어 2012년에는 8.89%까지 떨어졌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실적 호조는 수도권과 일부 대형업체의 수익 증가로만 이어지며 지역 중소업체는 오히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동계 개·폐막식장 설계 전면 재추진

김종덕 문체부 장관
“지붕설치 방안 등 검토”
수백억원 예산 소요
실제 반영여부 미지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폐막식장 설계가 전면 재추진된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설계대로 지어질 경우 문제가 있다는데 (평창 조직위와 강원도 등) 모두 인정을 했다”며 “총감독이 요구하는 사안 등을 포함해 개·폐막식의 용도에 맞게끔 설계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개·폐막식장이라는게 사실은 개·폐막식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곳”이라며 “그러나 (현재)개·폐막식의 행사 내용과는 상관없이 지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개·폐막식장의 지붕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평창의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개·폐막식장에 지붕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염동열(새누리당·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의 제안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따라 전면 재추진되는 개·폐막식장 설계에 지붕 설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붕설치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

요되는 만큼 실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도에 따르면 현재 설계와 시공을 맡은 대림건설에서 1차 기본설계안에 대해 전면 재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폐막식장에 대한 전면 재설계로 공기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개·폐막식 연습 등을 위해 2017년 8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올림픽 관련 턱없이 부족한 내년 사업 예산도 올림픽 준비에 발목을 잡고 있다.

도는 내년으로 예정된 일부 종목의 테스트 이벤트 개최 등을 위해 정부에 경기장 건설 2158억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 947억원 등 총 4262억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3391억원만 반영했다.

예산 삭감이 경기장 건설 예산에 집중되면서 테스트 이벤트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올림픽 특구 관광개발사업 예산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는 내년 올림픽특구 관광개발사업을 위해 247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150억원만 지원키로 했다.

문화올림픽 추진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도가 내년 사업예산으로 100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전액 삭감했다.

백오인·서울/진민수

건설산업 수익성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저조

건설, 작년 종합건설사 경영분석

매출액영업이익률 2.2%로 반등
부채비율·차입금의존도 낮아져
성장성 지표 매출증가율은 하락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건설기업들의 수익성이 지난해 소폭 상승으로 반전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전년의 절반 수준에 못 미쳤다.

대한건설협회 회장 최삼규가 9917개 종합건설사의 2014년 말 기준 재무제표를 분석해 7일 발표한 '2014년도 종합건설사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익성과 안정성이 미미하게 호전됐으나 성장성 지표는 전년보다 하락했다.

먼저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2%로 전



년의 1.9%보다 0.3%p 상승했다. 건설사들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난 2009년 5.2%에서 △2010년 5.0% △2011년 4.1% △2012년 3.2% △2013년 1.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이전의 하락세에서 벗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로 금융비용이 감소했고 건설기업의 영업외비용 절감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건설협회는 분석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수익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 2.2%는 100억원짜리 공사를 해서 2억2000만원을 남겼다는 의미다.

2013년 적자(-10)를 기록했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적자를 벗어났지만 0.3%에 불과했다. 영업외비용과 수익, 세금 등을 제외

하면 100억원 공사에서 3000만원을 남겼다는 의미다.

안정성의 경우 부채비율은 2013년보다 4.4%p 하락한 143.1%를 기록했고, 차입금의존도도 전년의 25.7%에서 23.6%로 2.1%p 하락했다. 유동비율은 부채 감소와 재고자산 증가 영향으로 3.2%p 상승한 141.5%로 나타나는 등 작년 건설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이 개선됐다.

성장성 지표를 살펴보면, 건설매출액은 210조4000억원에서 219조3000억원으로 4.2%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매출액증가율은 9.0%에서 4.2%로 하락했다. 건설 외 부문까지 포함한 매출증가율도 2.9%에서 2.4%로 하락했다.

총자산증가율은 3.1%에서 3.3%로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판매비와 관리비 등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2013년 당시 순이익이 종합건설사 경영분석을 시작한 1989년 아래 처음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2014년 수익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질적인 건설업계 수익성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의 정상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체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할 것

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등 공사물량 확대와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공사비 제도 및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 경영분석은 1989년부터 건설협회가 작성해 동계정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cae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석기자 jskim@

'종합평가낙찰제' 본격 시행 두달도 안 남았는데…

시범사업 연내 시행 불투명… 예규 발표도 지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시공품질·기술능력 평가 적정성 등을 검토할 시범사업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진 데다, 시범사업에 적용할 예규마저 발표가 지연되면서 외바퀴 수레를 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300억원 이상 지자체 공사 입찰에 적용하는 '종평제' 본격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여서 시범사업 기간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내년부터 공사비 300억원 이상 지자체 건

개선방안 제안조차 불가능 제도 안착시킬 대안 찾아야

설공사 입찰에 종합평가낙찰제를 본격 도입하고, 연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시범사업 시행 협의를 한 서울시와 SH공사, 서울시 중구청, 전라남도 등에서 공사물량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면서 '종평제' 시행에 난항이 예고됐다.

게다가 시범사업 기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행자부가 '종평제'를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종평제 시행 적용을 8월부터 준비했는데, 지금까지 예규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예규가 없으니 개선책을 고민하거나 제안하는 것도 어려

운 상황이다. 행자부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종평제'를 안착시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범사업은 발주청 설득이 잘 안 돼 난항을 겪고 있지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안 되면 모의입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의견을 모아 예규를 만들고, 이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에서는 '종평제'에 반영된 시공품질평가와 신기술개발 활용실적,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50% 이상(사회적 신인도 부문) 등에 대한 개선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공품질평가에서는 민간 또는 민자사업이나 해외시공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와 지자체의 자체 시공평가 시행 미흡 문제를 꼽았고, 신기술 개발 부문에서는 지역 중견·중소업체의 실적 미흡 문제,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은 만점 기준의 과다 설정 등이 제기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오늘의 주요 일정

- ▶ 기재부, 2015년 10월 최근 경제동향
- ▶ 정연만 환경부 차관, 대기 관련 기업체 간담회
- ▶ 한국은행, 2015년 9월 말 거주자 외화 예금 현황

【 2015.10.08(목) 건설경제 】

아하! 그렇구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법원 판례도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과 맺은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공공계약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였 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불공정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2013. 8. 6. 법률 제12012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신설된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①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

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은 무효로 된다.

②계약체결 이후 공사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조항이 무효로 된다.

③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주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무효로 한다.

④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⑤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와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